

2018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110호, **2018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18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서울시 '17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682,003백만원을 감채기금에 적립하여
- 지하철 9호선 및 신림선 건설 부채 상환 등으로 활용하고자 '18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

〈표 2-1〉 감채기금의 수입·지출 계획변경(안)

(단위 : 백만원)

< 수입계획 >				< 지출계획 >					
항·목		당초계획	변경계획	증·감	세부사업		당초계획	변경계획	증·감
		(A)	(B)	(B-A)			(C)	(D)	(D-C)
합 계		183,161	864,762	681,601	합 계		183,161	864,762	681,601
전입금	순세계잉여금	-	682,003	682,003	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상환	75,466	75,466	-	
	기타회계 전입금	4,166	4,166	-	지방채 차입금 원리금상환	7,320	77,320	70,000	
이자 수입	공공예금 이자수입	185	185	-	기타회계 전출금	100,000	100,000	-	
					기금관리비	50	50	-	
예치금회수		178,810	178,408	△402	예치금	325	611,926	611,601	

3. 검토의견

- 「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 제1항¹⁾은 법정정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%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음

1) 「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단, 일반회계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% 이상으로 한다.
 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
 - 나.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
 - 다. 기타 법규로 정한 의무적 지출액

- '1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2조 4,313억 9,500만원으로²⁾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에 따라 ① 시세수입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전출, ②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, ③ 타 회계전출 등 법정경비 등을 정산한 잉여금(1조 3,640억 600만원)이 발생하였음
- 법정경비 등을 정산한 잉여금의 50%에 해당하는 6,820억 300만원을 동 기금의 수입계획중 전입금(순세계잉여금)으로 증액편성하고, 예치금회수 수입은 일부 감액조정하여 동 기금의 수입계획은 당초보다 6,816억 100만원 증액 운용할 계획임
- 수입계획 변경에 따라 지출계획도 연동하여 6,816억 100만원 증액 운용할 계획인 바 예치금은 당초계획보다 6,116억 100만원 증액하고, 지방채차입금 원리금 상환도 700억원 증액하여 운용할 계획임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제2항3)에 따라 “정책사업”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
- 감채기금의 경우, **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**로 구성되어 일반적인 기금의 정책사업과 차이가 있으나 지출계획중 **재무활동**의 지출액을 당

2) 서울특별시 2017회계연도 결산서Ⅳ-1, (결산상 세입·세출 처리상황), p.24

3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**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**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'15.7.24.개정, '16.1.1.시행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초 계획액(1,831억 1,600만원) 대비 372.2%, 6,816억 100만원 증액된 8,647억 6,2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인 바, 대규모 재원의 기금 편입이라는 점에서 의회에 이를 보고하고 승인 요청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

〈표 3-1〉 감채기금 지출계획 변경(안)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				당초계획	수정계획	증 감 액	증 감 륜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편 성 목	통 계 목	(A)	(B)	(C)=(B)-(A)	(C)/(A)
총계					183,160	864,761	681,601	-
재무활동 (소계)					183,110	864,711	681,601	372.2
재무 활동	내부거래지출	재정투융자기금	예수금원리금상환	예수금원리금상환	71,300	71,300	-	-
		차입금상환	상환 ^{주1)}	예수금이자상환	4,165	4,165	-	-
		기타회계전출금	기타회계등전출금	기타회계전출금	100,000	100,000	-	-
		지방채차입금원리금상환	차입금이자상환	지방채증권이자상환	7,320	77,320	70,000	-
	보전지출	여유자금예치	예치금	은행예치금	325	611,926	611,601	-
행정운영경비 (소계)					50	50	-	-
행정운영경비	기본경비	기금관리비	일반운영비	사무관리비	50	50	-	-

주1) 지하철 건설채무 상환을 위해 감채기금에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수한 원리금을 상환

※ 행정안전부 「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 등에는 천원 단위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검토보고서의 경우,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

○ 다만,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이미 금년도 결산결과를 통하여 '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의 발생규모가 공개되었고, 「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4)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중 법정 정산금을 제외한 여유재원의 50%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음

- 따라서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앞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와 의회에 동 안건을 제출하는 일련의 절차가 적기에 진행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충분하였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불구하고, 지난 8월 21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위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물론 동 안건도 8월 24일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

-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 5)은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안제출 기한에 예외를 두고 있으나 '17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잉여재원을 예치금에 편성하는 동 안건이 긴급성이 요구되는 안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금 운용부서가 조례와 규칙이 정하고 있는 내용에 주의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됨

4) 「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단, 일반회계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% 이상으로 한다.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
나.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
다. 기타 법규로 정한 의무적 지출액

5)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(의안의 제출·발의)

①~② 생략

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